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정함(안 제2조)
- 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정함(안 제3조)
-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4조~제12조)
 - 1)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등
 - 2) 거창군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안 부칙 제2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 사.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정함(안 제15조)
- 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정함(안 제16조)
- 자.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2)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억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7.~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3. 지역환경 영향평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
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나. 관련조문: 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 5년마다 수립

(나) 용역비: 1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국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0
군비		30,000

국비:군비=70:30

작성자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